

2023년 세무사 1차 대비 중요조문 모의고사

1. 다음은 행정소송법의 중요조문이다.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민중소송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.
- ② 기관소송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상호 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.
- ③ 행정소송법에 의한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국외에서의 소송행위추완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14일에서 30일로,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, 소의 제기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60일에서 120일로 한다.
- ④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명령·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2. 다음은 행정소송법의 중요조문이다.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형사소송법,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.
- ② 취소소송의 제1심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.
- ③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다.
- ④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당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·판단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소법원은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에게 그 선결문제로 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

3. 다음은 행정소송법의 중요조문이다.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처분 등이 있는 뒤에 그 처분 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그 처분 등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피고로 한다.
- ②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.
- ③ 피고경정결정이 있을 때에는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.
- ④ 피고경정결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.

4. 다음은 행정소송법의 중요조문이다.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법원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.
- ② 참가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 및 제3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- ③ 법원은 다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 또는 당해 행정청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.
- ④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.

5. 다음은 행정소송법의 중요조문이다. 옳지 않은 것은?

제18조(행정심판과의 관계) ③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.

- ① 1.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을 때
- ② 2.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
- ③ 3.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종결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
- ④ 4.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

6. 다음은 행정소송법의 중요조문이다.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법원은 취소소송을 당해 처분등에 관계되는 사무가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당사자소송 또는 취소소송외의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소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.
- ② 법원은 행정청이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소가 제기된 후 변경한 때에는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.
- ③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신청은 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.
- ④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.

7. 다음은 행정소송법의 중요조문이다.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써 재결을 행한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.
- ② 법원은 사정판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 등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.
- ③ 법원이 사정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미리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하여야 한다.
- ④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.

8. 다음은 행정소송법의 중요조문이다.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청구는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,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30일만 불변기간이다.
- ② 행정청이 재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심주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.
- ③ 무효등확인소송에도 집행정지가 준용된다.
- ④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도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, 제소기간이 준용된다.

9. 다음은 행정소송법의 중요조문이다.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당사자소송에 관하여 법령에 제소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.
- ②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 가집행정고를 할 수 없다.
- ③ 민중소송 또는 기관소송으로써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- ④ 민중소송 또는 기관소송으로써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나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각각 무효등 확인소송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